|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소규모납세자 기준 관련 수출퇴(면)세 문제 통일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8년제20호  <재정부, 세무총국의 증치세 소규모납세자 기준 통일에 관한 통지>(재세[2018]33호), <국가세무총국의 소규모납세자 기준 통일 등 몇 가지 증치세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8년제18호) 및 현행 수출퇴(면)세 유관 규정에 근거, 소규모납세자 기준 통일과 관련된 수출퇴(면)세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일반납세자가 소규모납세자(이하 ‘전환등기납세자’이라 약칭)로 전환 등기하는 경우, 일반납세자 기간에는 증치세 퇴(면)세 정책을 적용한 화물용역 수출 및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한 국경간 과세행위(이하 ‘화물용역 및 서비스 수출’이라 약칭)는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퇴(면)세 관련 사항을 신고 처리한다.  전환등기 다음 기부터 전환등기납세자의 화물용역 및 서비스 수출은 증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하고, 현행 소규모납세자의 유관 규정에 따라 증치세 납세 신고를 처리한다.  화물용역 및 서비스 수출 기간은 아래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해관에서 수출 신고한 화물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화물신고서상 명시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수출 판매 신고하지 않는 화물,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한 국경간 과세행위의 발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 세금계산서 또는 일반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보세구내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수출한 화물 및 보세구를 경유하여 수출한 화물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세관이 발급한 출경(出境)화물비안명세서에 명시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2. 기존에 면저퇴세(免抵退稅: 번역자 주 - 세액의 면제, 공제, 환급) 방법을 적용한 전환등기납세자가 일반납세자 기간에 화물용역 및 서비스를 수출하고 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매입세액과 전환등기 당기의 기말 이월공제세액은 “미납세금과 비용-공제대기 매입세액”으로 계상하여 면저퇴세액 계산에 포함시킨다. 상술한 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국가세무총국공고2018년제18호 제4조 제2항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상술한 전환등기납세자에게 국가세무총국공고2018년제18호 제5조에 서술된 상황 및본 공고 제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출퇴(면)세 또는 반송 신고처리 등 상황이 발생하여 “미납세금과 비용-공제대기 매입세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사실에 근거 조정하여야 하고, “미납세금과 비용-공제대기 매입세액”의 변동상황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3. 기존에 면∙퇴세 방법을 적용한 전환등기납세자가 일반납세자 기간에 화물용역 및 서비스를 수출하고, 면∙퇴세 신고를 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계속해서 면∙퇴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상술한 면∙퇴세를 신고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국가세무총국공고2018년제18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 중, 면∙퇴세 신고 용도로 사용되는 해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는 전환등기납세자가 전자정보 비교대조 검사를 신청하지 않고, 주관세무기관 조회를 거쳐 해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 전자정보와 부합하고 공제 또는 퇴세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전환등기납세자는 수출퇴(면)세액을 결산한 후, 규정에 따라 수출퇴(면)세 비안 변경을 처리하여야 한다.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이하 ‘종합서비스기업’이라 약칭)에게 퇴세 대행을 위탁한 전환등기납세자는 종합서비스기업 주관 세무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종합서비스기업에게 해당 전환등기납세자의 퇴세 대행액을 결산한 후, 규정에 따라 퇴세 대행 위탁 비안을 철회해야 한다.  5. 전환등기납세자가 일반납세자로 재등기하는 경우, 수출퇴(면)세 업무가 새로 발생한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와 비교 대조하여, 수출퇴(면)세 유관 사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공고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4월22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统一小规模纳税人标准有关出口退（免）税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20号  　　根据《财政部 税务总局关于统一增值税小规模纳税人标准的通知》（财税〔2018〕33号）、《国家税务总局关于统一小规模纳税人标准等若干增值税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18号）及现行出口退（免）税有关规定，现将统一小规模纳税人标准有关出口退（免）税问题公告如下：  　　一、一般纳税人转登记为小规模纳税人（以下称转登记纳税人）的，其在一般纳税人期间出口适用增值税退（免）税政策的货物劳务、发生适用增值税零税率跨境应税行为（以下称出口货物劳务、服务），继续按照现行规定申报和办理出口退（免）税相关事项。  　　自转登记日下期起，转登记纳税人出口货物劳务、服务，适用增值税免税规定，按照现行小规模纳税人的有关规定办理增值税纳税申报。  　　出口货物劳务、服务的时间，按以下原则确定：属于向海关报关出口的货物劳务，以出口货物报关单上注明的出口日期为准；属于非报关出口销售的货物、发生适用增值税零税率跨境应税行为，以出口发票或普通发票的开具时间为准；属于保税区内出口企业或其他单位出口的货物以及经保税区出口的货物，以货物离境时海关出具的出境货物备案清单上注明的出口日期为准。  　　二、原实行免抵退税办法的转登记纳税人在一般纳税人期间出口货物劳务、服务，尚未申报抵扣的进项税额以及转登记日当期的期末留抵税额，计入“应交税费—待抵扣进项税额”，并参与免抵退税计算。上述尚未申报抵扣的进项税额应符合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18号第四条第二款的规定。  　　上述转登记纳税人发生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18号第五条所述情形、按照本公告第一条第一款规定申报办理出口退（免）税或者退运等情形，需要调整“应交税费—待抵扣进项税额”的，应据实调整，准确核算“应交税费—待抵扣进项税额”的变动情况。  　　三、原实行免退税办法的转登记纳税人在一般纳税人期间出口货物劳务、服务，尚未申报免退税的进项税额可继续申报免退税。  　　上述尚未申报免退税的进项税额应符合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18号第四条第二款的规定。其中，用于申报免退税的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转登记纳税人不申请进行电子信息稽核比对，应经主管税务机关查询，确认与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电子信息相符且未被用于抵扣或退税。  　　四、转登记纳税人结清出口退（免）税款后，应按照规定办理出口退（免）税备案变更。  　　委托外贸综合服务企业（以下称综服企业）代办退税的转登记纳税人，应在综服企业主管税务机关按规定向综服企业结清该转登记纳税人的代办退税款后，按照规定办理委托代办退税备案撤回。  　　五、转登记纳税人再次登记为一般纳税人的，应比照新发生出口退（免）税业务的出口企业或其他单位，办理出口退（免）税有关事宜。  六、本公告自2018年5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8年4月22日 |